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. 11. 2. 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10월 21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26일

라. 상정일자: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10. 3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국장 유옥준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스포츠클럽법」 제정(2022.06.16.시행)에 따라 기존 조례와의 조항 간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 회계 관리 사항을 명확히하여 스포츠클럽의 올바른 육성과 원활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명 개정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개정 조례안은
- 「스포츠클럽법」 제정(2022.06.16.시행)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과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체육발전과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.
- O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른 상위법명과 조 문 번호를 개정함.
- 안 제2조는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3조는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또는 관리 위탁 시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신설함.
- 안 제5조는 보조금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회계책임자 운영 및 보조금 관리·운용 관련서류의 관리 의무를 신설함.
- 안 제6조는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의 사업에 대한 관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「스포츠클럽법」제정에 맞추어 관련 사항을 개정에 반영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영등포구 스포츠클럽의 건 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38 호

제출연월일: 2022. 10. 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스포츠클럽법」제정(시행일: '22.6.16.)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상위법명을 변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른 상위법명 개정(안 제1, 2조)
- 나.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의 정의 구분(안 제2조)
- 다.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 우선 수의허가 및 수의계약(안 제3조)
- 라. 회계책임 명확화, 보조금 관리·운용 철저, 중단 규정 등 신설(안 제5,6,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스포츠클럽법」, 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, 「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2. 09. 15. ~ 10. 5./ 20일간) 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생활체육진흥법」제9조제2항"을 "「스포츠클럽법」 제3조"로 한다. 제2조제1호 중 "「생활체육진흥법」"을 "「스포츠클럽법」"으로, "제2조제5호"를 "제2조제1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"지정스포츠클럽"이란 주사무소가 구에 있는,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 클럽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"법 제9조제2항"을 "법 제3조"로, "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"을 "필요한"으로, "체육시설을 위탁·운영"을 "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.

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

신설한다.

제5조(회계관리)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 하여야 한다.

제6조(종전의 제5조)제1항 중 "하게하거"를 "하게 하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점검결과"를 "지도·감독 결과"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종전의 제5조)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클럽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제7조(종전의 제6조) 중 "제5조"를 "제6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생활체육</u>	제1조(목적) <u>「스포츠클</u>
진흥법」제9조제2항에 따라 서	럽법」 제3조
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체육의	
활성화를 도모하고, 구민의 건	
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	
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	
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	
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스포츠클럽"이란 주사무소	1
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	
"구"라 한다)에 있는, 「생활체	「스포츠
<u>육진흥법」</u> (이하"법"이라 한	클럽법
다) <u>제2조제5호</u> 에 따른 법인	<u>제2조제1호</u>
또는 단체를 말한다.	<u>.</u>
<u><신 설></u>	2. "지정스포츠클럽"이란 주사
	무소가 구에 있는, 법 제2조제
	2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
	<u>한다.</u>
<u>2</u> . (생 략)	<u>3</u> . (현행 제2호와 같음)
제3조(지원 및 범위) ① 서울특별	제3조(지원 및 범위) ①
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	
이라 한다)은 <u>법 제9조제2항</u> 에	<u>법 제3조</u>
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	
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<u>법</u>	<u>필</u>

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항에 대 요한 -----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체육시설을 위탁・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체육시설의 위탁・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 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 규정을 | 적용한다.

<신 설>

제5조(지도・감독) ① 구청장은 제6조(지도・감독) ① -----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

----- 법 제15조제1항에 따 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 나 그 관리를 위탁---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「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 1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 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.

제5조(회계관리)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・운용 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 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・운영 하여야 한다.

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 하게 관리 •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 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 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 야 한다.

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<u>하게하거</u>나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<u>점검결과</u>,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 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<u><후단 신설></u>

<신 설>

제6조(환수) 구청장은 제5조의 지 조 도·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 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제7조 (생략)

<u>하게 하거</u>
② <u>지도·감독</u>
결과
<u>이 경우 스포츠클</u>
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
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
스포츠클럽이 제2항을 위반한
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
<u>수 있다.</u>
세 <u>7조</u> (환수) <u>제6조</u>
세8조 (현행 제7조와 같음)